

일선기관	관할구역	문의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2-6711-2914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평창군	051-520-0558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62-949-8718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함평군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신안군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53-609-0574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고창군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군위군,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석적읍·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032-510-0643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고령군·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42-620-567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영동군	031-259-726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예산군·태안군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음성군	
경기광역본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시흥시	031-259-726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양평군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산재예방요율제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14.1.1.시행)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산재예방요율제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위험성평가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 다음 연도부터 산재보험료율 할인이 적용되며, 재해예방활동 당해 연도 인정유효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다음 연도 보험료율에 할인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에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았을 경우,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3년)



보험료율 할인(인정 다음 연도부터 일할계산)

공단 교육신청 방법

1.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최신 걸 환영합니다.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접속)
2. 안전보건공단교육 클릭
3. 교육신청
4. 교육기관별 교육신청
5. 일선기관 신청
6. 집체교육 선택
7. 과정명 입력 후 검색
8. 교육신청

#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14.1.1.시행)

### 적용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가능

### 적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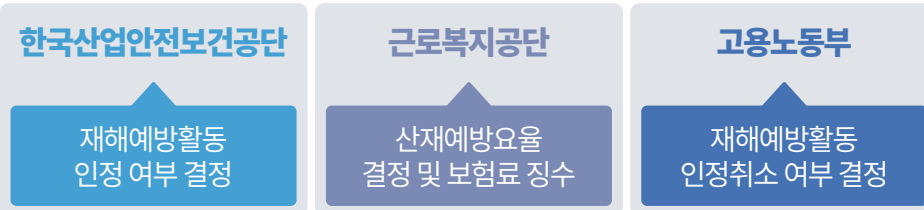
①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②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 인하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을 둘 다 받은 경우 인하율이 더 높은 것으로 적용



### 재해예방활동 유효기간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 (전년도 인정유효일수를 일할계산)  
- 위험성평가 인정 : 인정일로부터 3년  
- 사업주교육 인정 : 인정일로부터 1년

### 업무처리기관



## 위험성평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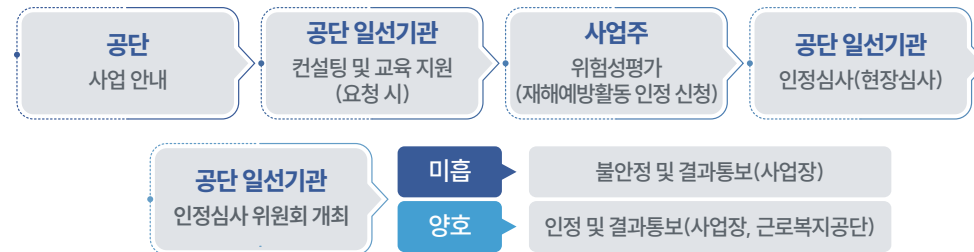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심사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인정 절차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 컨설팅 가능

### 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주교육)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한 민간 교육기관(평가담당자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민간교육기관 교육-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에서 민간교육 기관 목록 및 교육 신청 가능

###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 또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또는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인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 제출시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자동 제출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비대상 사업장이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별도 신청 필요

## 위험성평가 인정

### 인정 혜택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받을 수 있음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시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가능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인정 기간 동안 산재 보험료율 인하 (3년간 20%)
- KOSHA-MS 컨설팅 및 실태 심사 비용 지원
- IBK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대출 금리 감면

## 사업주교육 인정

### 사업주교육 인정이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이수 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

###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법인은 대표이사)

※ 교육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 필요

### 인정 절차



## 사업주교육 인정

### 시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및 지역본부·지사에서 무료 실시

### 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상시 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또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신청

### 상시 근로자수 증명 첨부 자료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b>다음 서류 중 택 1</b> ① 전년도 임금대상 사본 ②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③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신고서 사본	<b>다음 서류 중 택 1</b> 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②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력 확인서

### 시간/방법

4시간, 집체교육

### 교육내용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책임, 위험성평가 및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실습) 등

### 인정 혜택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인정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1년간 10%)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더라도 인정기간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

- 사업주 교육 이수 시 위험성평가 인정을 위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

